제33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의 안 번 호	2986

이영실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중랑1)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하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리하면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